

심의결과 일괄적으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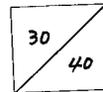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62	26	1994. 11. 24.	홍재김영호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제외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 개략중 일부불 조기 시행코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 ① (생 략)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 략)

- (붙임)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5조 (생략) (신설)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3. 1.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2. (경과조치) 1994. 2. 28. 이전에 계약된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답촉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시행일전에 계약된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이율 적용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구분 이율	구분 이율	
1 정기예금 :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다만, 2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 정기예금 :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0%	-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금리자유화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정기적금 :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다만, 3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9 정기적금 :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2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금리자유화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안)		비고
구분	이율	구분	이율	
11.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 8.5%. 다만, 3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1.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2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5%	-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금리자유화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상호부금	연 8.5%. 다만, 3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3. 상호부금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2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5%	-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금리자유화
14. 주택부금	연 8.5%. 다만, 3년이상 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4. 주택부금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2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5%	-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금리자유화
15 ~16.	(생략)	15. ~16.	(현행과 같음)	